

호우·태풍 대비 사업장 자체점검표

사업장명

점검자

소재지

점검일자

	점검 내용	점검 결과	조치사항 및 개선계획
공통	☒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및 재해복구반 등을 구성·운영하고 있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	
	☒ 자연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	
	☒ 도급·수급업체 간 합동점검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논의하였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	
	☒ 침수·붕괴 등 위험장소에 대한 사전 인원·차량 등의 통제(출입금지 등)를 실시하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	
	☒ 집중호우, 태풍 등에 따른 작업중지 등을 조치하고 있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	
	☒ 고립·정전 등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 구호용품이 구비되어 있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	
	☒ 호우·태풍 발생 후 복구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등이 정해져 있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	
강풍	☒ 강풍 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, 간판, 자재, 기계·기구 등에 대한 결속상태를 점검하였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	
	☒ 타워크레인 사용 시 붐이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사전에 브레이크 해제 등 조치를 하였는가?(부러짐, 힘 방지)	☐ 적합 ☐ 부적합	
침수	☒ 호우 시 침수 위험, 오물 유입 등에 대비해 배수구 점검 등을 실시하였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	
	☒ 침수 대비 양수기 등 긴급 복구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	
붕괴	☒ 호우·태풍 시 재난 위험장소(토사유실, 지반약화, 산사태 우려 등)가 있는지 사전 위험성평가 및 점검 등을 실시하였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	
	☒ 토사 붕괴 우려장소에 방수포,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 붕괴 예방조치를 하였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	
	☒ 사업장이 산사태 우려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사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가?(노동자 대피계획 등)	☐ 적합 ☐ 부적합	
감전	☒ 침수 등에 대비하여 전기 기계·기구 등에 대한 감전 예방조치(충전부 방호, 누전차단지 설치, 접지 등)를 하였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	



대응요령

- ▶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▶ 즉시 작업 중단 및 대피
- ▶ 호우·태풍 발령 지역 ▶ 태백·유연근무, 휴가 적극 활용



점검자 :

(서명)

대표자 :

(서명)

호우·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

공통사항

- 집중호우·태풍 예비 특보 발령지역 사업장은 **재택근무 실시** 및 **휴가 적극 권고**
- 호우·태풍에 의한 **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**이 있는 경우 **작업중지**
* 산안법 제51조(사업주의 작업중지),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
- 호우·태풍 발생시부터 **기상특보 발령 상황 상시 모니터링**
* (기상청) 날씨누리 홈페이지, 기상특보 상황(날씨 > 기상특보 > 특보현황)

강풍

- ☑ 각종 시설물, 표지판, 자재 등 결속상태 점검
- ☑ 타워크레인 불이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브레이크 해제(부러짐, 휨 방지)
- ☑ 강풍 시 철골조립, 양중작업 등 야외작업 중지

침수

- ☑ 배수로, 배수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
- ☑ 침수 위험 장소 빗물 유입 차단 조치
- ☑ 지하구조물 등 침수 우려 장소 작업 중지
- ☑ 침수된 장소에 인원 및 차량 출입통제 (감전, 질식 위험 확인)

붕괴

- ☑ 옹벽, 석축 등 붕괴 우려 장소 사전점검
- ☑ 방수포,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예방조치 실시
- ☑ 붕괴매몰 발생 우려 장소에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
- ☑ 산사태 우려 지역은 사전 대비태세 유지 (비탈면 유실 여부 점검, 근로자 대피계획 수립 등)

감전

- ☑ 총전부 및 배전반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(침수 우려 시 전기설비 이전 설치)
- ☑ 누전차단기 연결, 외함접지, 절연상태 점검 및 보수
- ☑ 침수 등 손상된 기계·설비 점검 시 사전 전원차단 조치

호우·태풍에 의한 재해유형

홍수·침수

유해·위험요인

- 배수로 정비 미비로 인한 건물 및 지하구조물 침수
- 집중호우·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침수 및 휜침

예방대책

- 배수로 및 물막이판 등 정비 실시
- 호우·태풍 등 악천후 예상 시 사전 근로자 대피기준 마련 및 교육 실시, 위험작업 중지조치

태풍·강풍

유해·위험요인

- 강풍에 의한 시설물 넘어짐, 무너짐
- 강풍에 날리거나 낙하하는 자재 등에 의한 감전

예방대책

- 각종 시설물 결속상태 점검 및 보강
- 자재 등의 낙하 우려 장소 접근 통제

감전

유해·위험요인

-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·기구 취급으로 인한 감전
- 태풍으로 무너진 전주, 전선 등에 의한 감전

예방대책

- 전기기계·기구의 절연 및 충전부 방호장치 실시
-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 실시

붕괴·매몰

유해·위험요인

- 토사유실 또는 지반약화로 인한 굴착사면 무너짐
- 배수불량으로 인한 용벽 및 석축 붕괴

예방대책

- 사면 덮개 설치 등 사전 우수 침투방지조치 실시
- 지반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주기적 계속 실시
- 산불 피해지역 등 산사태 우려 인근 사업장은 대피요령 숙지

호우·태풍 대비 사업장 자체점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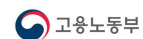
점검 내용	
감시	☑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및 재해복구반 등을 구성·운영하고 있는가?
	☑ 자연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가?
	☑ 도급·수급업체 간 합동점검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논의하였는가?
	☑ 침수·붕괴 등 위험장소에 대한 사전 인원·차량 등의 통제(출입금지 등)를 실시하는가?
강제	☑ 집중호우, 태풍 등에 따른 작업중지 등을 조치하고 있는가?
	☑ 고립·정전 등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 구호용품이 구비되어 있는가?
	☑ 호우·태풍 발생 후 복구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등이 정해져 있는가?
	☑ 강풍 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, 간판, 자재, 기계·기구 등에 대한 결속상태를 점검하였는가?
침수	☑ 타워크레인 사용 시 불이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사전에 브레이크 해제 등 조치를 하였는가(기부리짐, 칠 방지)?
	☑ 호우 시 침수 위험, 우물 유입 등에 대비해 배수구 점검 등을 실시하였는가?
	☑ 침수 대비 양수기 등 긴급 복구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가?
	☑ 호우·태풍 시 재난 위험장소(토사유실, 지반약화, 산사태 우려 등)가 있는지 사전 위험성평가 및 점검 등을 실시하였는가?
붕괴	☑ 토사 붕괴 우려장소에 방수포, 흙막이보강 설치 등 붕괴 예방조치를 하였는가?
	☑ 사업장이 산사태 우려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사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가(노동자 대피계획 등)?
	☑ 침수 등에 대비하여 전기 기계·기구 등에 대한 감전 예방조치(충전부 방호, 누전차단기 설치, 접지 등)를 하였는가?
	☑ 산입재에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▶ 즉시 작업 중단 및 대피

대응요령
 ○ 산입재에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▶ 즉시 작업 중단 및 대피
 ○ 호우·태풍 발생 지역 ▶ 재택·유연근로, 휴가 적극 활용



호우·태풍 시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

사업장 위험상황신고 1588-3088



호우·태풍 시 단계별·유형별 안전관리 이행수칙



호우특보 발표기준	대응대책	위기상황,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
주의보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경보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	호우·태풍 예비특보 발령지역 ▶ 재택·유연근로·휴가 적극 활용 급박한 산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▶ 즉시 작업중지하고 근로자 대피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52)703-0110~0113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)205-1541~3 재난신고 119, 범죄신고 112, 민원상담 110

재난 단계별

호우·태풍 발생 전

- 사전 사업장 내 위험장소 확인 및 위험성평가 실시
-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수립 (상황전파, 근로자 대피 등)
- 주요 유관기관 연락망 구축(병원, 소방, 경찰 등)
- 사업장 소재 지역의 태풍 북상시기 및 호우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
- 산불 등에 따른 산사태 우려 지역은 사전 대비태세 유지 (비탈면 유실 여부 등 점검, 근로자 대피계획 수립 등)

건설업

- 현장 주변 취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
-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확보
- 굴착사면 등 우수 침투방지조치 실시

건설업 외 (제조, 서비스업)

- 비상을 수해방지 자재·장비 확보 후 비치
- 전기기계·기구의 접지상태 등 사전 안전점검 실시

호우·태풍 발생 시

- 기상청 특보 수시 확인 등 기상 변화 주시
- 특보 발령 등 기상악화 시 재택·유연근로 및 휴가 권고
- 집중호우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
- 유리창, 가설구조물 인근 등 낙하를 우려장소 접근통제
- 산사태, 토석류 발생 우려 시 근로자 대피 (사업장 인근 지정 대피소 사전 확인)

건설업

- 강풍·강우 시 철골 조립, 타워크레인 인상, 양중작업 등 야외작업 중지
- 굴착부, 맨홀 등 침수 우려 장소에 대한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

건설업 외 (제조, 서비스업)

-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·기구, 전선 등 접촉금지
- 지하층 등 침수된 장소의 출입통제(감전, 질식사위험)

호우·태풍 발생 이후

- 침수된 건물, 공장 등 설비 제거 등 전 안전점검 실시
- 복구작업 시 안전보건수칙 준수 및 개인보호구 착용
- 사업장 주변 공용 시설물의 파손, 지반 침하 및 산사태 위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

건설업

- 현장 침수 후 복구 작업 재투입 시 사전 감전위험조사 (분전함 등) 확인
- 주요 가설구조물(동바리, 비계, 흙막이보강) 및 장비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인

건설업 외 (제조, 서비스업)

- 침수 등 손상된 기계·설비 등 점검 시 사전 전원차단 조치 실시
- 수해복구 등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, 안전난간 설치, 개인보호구 착용